



전주풍남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안)

1. 1차 개정(1999. 02. 03)
2. 2차 개정(2002. 12. 23)
3. 3차 개정(2006. 01. 18)
4. 4차 개정(2011. 05. 01)
5. 전부 개정(2019. 07. 25)
6. 부분 개정(2020. 09. 15)
7. 부분 개정(2021. 01. 28)
8. 부분 개정(2022. 09. 30)
9. 부분 개정(2023. 02. 23)
10. 전부 개정(2023.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전주풍남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우리 학교는 “전주풍남초등학교” 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1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여름휴가)
 3. 겨울방학(겨울휴가)
 4. 학년말 방학(학년말휴가)
 5. 토요휴업일
 6. 학교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1항 외에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9조 (학생정원)

- ①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 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 (교과)

초등학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이다.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학교 · 학년 · 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 · 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 ③ 학교장은 특수학급을 편성할 경우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 ① 초 · 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수업운영방법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업은 주간(晝間) · 전일제(全日制)로 한다.
- ③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1. 방송 ·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⑥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체험학습을 해당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개인교환학습은 1개월(4주) 이내로 한다.
 2.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4.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5.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교외체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6.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7. 기타 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14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교평가 기본 계획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시행한다.

제15조 (과정수료의 인정)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 ③ 귀국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등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는 ②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학적 (입학·전입학·출결·졸업 등)

제16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자(입학할 학교 변경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는 자(귀국학생 등)
4.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②항에 해당되는 자(조기입학 자)

제17조 (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취학유예 및 면제)

- ①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4조 ①항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③항에 해당되는 자(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 ②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 ③ 학교의 장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 (전입학)

- ①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입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 ②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출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전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자료 송부를 요청받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 ⑤ 학교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21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2조 (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등
 -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학생출결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3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4조 (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5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6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③ 학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제28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자로서 다음 1,2학년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8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⑦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9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기타비용징수

제30조 (비용 징수)

- ① 수업료와 입학금은 무상으로 한다. .
-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현장학습비, 졸업앨범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징수한다.

제8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제31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료,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2조 (학생훈육 및 징계)

- ① 학교장은 학생훈육 및 징계 등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①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제9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5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2. 검정고시 응시, 험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정후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0장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 (학생자치활동)

-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 다모임회를 둔다.
- ② 전교 다모임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자치활동 계획에 따른다.

제37조(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등)

- ① 학교장은 현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한 교육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장애인 차별금지)

학교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따라야 한다.

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 ① 학교장은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전주풍남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위원회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위원은 전체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④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학교규칙의 개정)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풍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학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무회의 의결(과반수 의결 찬성)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학교규칙의 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③ 본 학교 규칙과 각종 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규칙,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 훈령, 규칙, 규정상 학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